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 적)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교내 교원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 ① 연구부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"라 한다)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 - 1.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 - 2.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 - 3.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
 - 4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·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 ·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
 - 5.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
 - 6.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 - 7.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
 - 8.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
 -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본교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교내에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연구부정행위의 판단)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.
 - 1.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
 - 2. 해당 행위 당시의 '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'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
 - 3. 행위자의 고의,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,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,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②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'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'를 판단하고 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6조(용어의 정의) ① "제보자"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 - ② "피조사자"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- ③ "예비조사"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
④ "본조사"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
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, 의결한다.

- 1. 연구윤리 ·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 자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4.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,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
- 5.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
- 6.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8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- 1. 본교 일반대학원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2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간 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며 산단경영지원팀장이 된다.
- 제11조(회 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7조의 제3호와 제6호
 - 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2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왼다.
 - ② 실무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건에 대한 접수여부를 사전 심의한다.
 - ③ 실무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부위원장, 산학협력단 행정부단장, 감사팀장의 총3인으로 구성한다.

제 3 장 제보 및 접수

- 제13조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4조(제보자의 권리보호)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,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 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-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 -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- 제15조(피조사자의 권리보호)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)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
제 4 장 예비조사

- 제17조(예비조사위원회)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제18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, 예비조사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삭제
 -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 - 1.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 - 3. 삭제
- 제19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 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 다만 제12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
 - 3.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 - ④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.
 - ⑤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
제 5 장 본조사

- 제20조(본조사 착수 및 기간)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본조사는 본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.
 -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.
- 제21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% 이상 포함하며,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% 이상 위촉한다. 단, 피조사자가 본교 직원인 경우 위원 중 30% 이상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위촉한다.
 -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- 제22조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· 피조사자 ·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"진술권 포기서"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23조(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(이하

- "최종보고서"라 한다)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
- 3. 관련 증거, 증인 및 진술서
- 4. 조사결과

제 6 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

- 제24조(판정)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재심의)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26조(결과에 대한 조치) ①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,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.
 -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그 검증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.
 -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7 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

- 제27조(기록의 보관)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인 공동기기원행정실에서 5년간 보관한다.
- 제28조(비밀엄수)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(위원회 위원·간사 등을 포함한다)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제 8 장 연구윤리 교육

- 제29조(연구윤리 교육 책임)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- 제30조(연구자의 책임)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9 장 보 칙

제31조(운영예산)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제32조(예외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친

제1조(시행시기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16조제②항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